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7088
----------	-------

발의연월일 : 2015. 10. 7.

발 의 자 : 류지영 · 송영근 · 유의동  
김명연 · 서상기 · 정병국  
홍지만 · 민현주 · 경대수  
김광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12월 30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규정하는 근거규정인 제5조 역시 삭제됨.

이에 현행법 제4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근거규정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로 개정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2항).

법률 제 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u>수급권자</u>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게 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생 략)</p>	<p>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 ----- -----.</p> <p>③ (현행과 같음)</p>